

## 침구류 세탁처리 단가계약 업체선정 공고

다음과 같이 업체선정 내용을 공고합니다.

2006. 1. 23.

중앙소방학교 재무관

1. 계약건명 : '06년도 중앙소방학교 세탁물 단가 계약
2. 공고기간 : '06. 1. 23(월) ~ 2.1(수)(10일간)
3. 견적서 제출 : '06. 2.1(수) 18:00까지
4. 현장 실사 : '06. 2. 3(금) 10:00~18:00
5. 견적서 제출 장소 : 중앙소방학교 서무과 경리계  
※ 견적서 제출 전 현장방문을 통하여 세탁물 크기 및 재질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문의 지도계 041-550-0964)
6. 참가자격
  -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세탁업으로 신고된 자
  -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등록된 자
  - 태양건조가 가능하며, 24시간 이내 납품이 가능한자
  - 사업장 규모는 실사를 통하여 현장 확인를 실시함.
7. 제출서류
  - 2006년 집행 예정 금액 : ₩20,369,000
  - 품목별 견적서 1부

[품목별 단가를 작성하여 제출]

품 명	규 격	단 위	단 가 (원)
메트리스 카바	면 류	장	
모 포	밍 크	”	
모 포	카시미롱	”	
이 불	여 름 용	”	
이 불	겨 울 용	”	
커 튼	사계절용	”	
베게카바	면 류	”	
훈련복	상하 1set	벌	
훈련복 수선	상	벌	
훈련복 수선	하	벌	

※ 제품의 크기 및 재질이 일부 상이하므로 평균가를 적용함.

#### 8. 낙찰자 결정

- 사업장 규모 실사 후 우선협상 대상자와 제출된 가격을 기본으로 수의시담 실시

#### 9. 유의사항

- 계약이행담보를 위하여 1회 최대금액(금이백만원)의 10%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함.

#### 10. 기타 의문사항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해서는 우리학교

서무과로 (TEL:041-550-0915, FAX:041-550-0950) 문의 바랍니다.

2006년 1월 23일

**중앙소방학교 재무관**

# 세탁 과업지시서

## 1. 목적

- 본 과업지시서는 “중앙소방학교”의 세탁작업에 관한 용역수행 과업을 정하는데 있다.

## 2. 세탁 과업기간 및 대상범위

- 기 간 : 계약일로부터 ~ 2006. 12. 31.
- 대 상 : 메트리스 카바 외 7종
- 세탁주기 및 사용기간 : 세탁물 발생시 마다

## 3. 세탁작업

### 가. 세탁물 반출

- ‘세탁업체’는 ‘중앙소방학교(담당공무원)’으로부터 전화 또는 구두로 작업사항을 통보받는 즉시 수량, 납기일 등을 확인한 후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세탁물을 반출한다
- 세탁물 수거 및 납품 회수 : 별도의 기간 없이 발생시 마다

### 나. 세탁물 세탁

- 1) 세탁물은 물세탁을 기본으로 한다.
- 2) 예비세탁 : 세탁기의 용량에 맞추어 최적의 세탁을 할 수 있는 적정량의 세탁물을 넣고, 세탁물이 물에 완전히 잠겨진 후에 적정량의 합성세제를 투입하여 예비세탁을 실시한다.
- 3) 본 세탁 : 예비 세탁 후 적정량의 소독제 및 표백형광처리제를 주입하고 적정량의 물을 추가 주입한 후 2차 세탁을 실시한다.
- 4) 행 굵 : 2회 이상 행굼을 실시하여 합성세제와 표백형광처리제를 완전히 제거하고 마지막 행굼시 세탁물의 정전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세제를 사용한다.
- 5) 탈 수 : 세탁물의 훼손이 없도록 적정한 속도 및 시간으로 탈수한다.
- 6) 건조 : 태양건조 및 건조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건조시킨다.  
※ 이불류(동기이불, 패드, 하기이불 등)는 반드시 태양건조를 하여야 하며

베개피, 침대시트는 강제건조를 하여 구김이 없도록 한다.

7) 다리미질 : 베개피 및 동기이불피는 구김이 없도록 다리미질을 한다.

#### 다. 세탁물 납품

- 1) 요구한 납기일 및 납기시간에 맞추어 납품한다.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.
- 2) 세탁물을 납품시에는 수량을 확인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다. (장소 : 생활관 각 호실 및 침구류 보관창고)
- 3) 검사공무원이 납품된 세탁물을 확인한 결과, 세탁에 이상이 있어 재세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- 4) 반출시 온전한 세탁물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(동일 사양 침구류를 구입하여 제출)을 진다.
- 5)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세탁사항에 대해서도 담당공무원의 합리적인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따른다.

4.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침구류 세탁의 일반원칙 등을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으로 본다.

1. 계약건명 : '06년도 중앙소방학교 세탁물 단가 계약
2. 공고기간 : '06. 1. 23(월) ~ 2.1(수)(10일간)
3. 견적서 제출 : '06. 2.1(수) 18:00까지
4. 현장 실사 : '06. 2. 3(금) 10:00~18:00
5. 견적서 제출 장소 : 중앙소방학교 사무과 경리계
6. 참가자격
  -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세탁업으로 신고된
  -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등록된 자
  - 태양건조가 가능하며, 24시간 이내 납품이 가능한자
  - 사업장 규모는 실사를 통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함.
7. 제출서류
  - 2006년 집행 예정 금액 : ₩20,369,000
  - 품목별 견적서 1부  
[계약서 제2조의 품목별 단가를 작성하여 제출]
8. 낙찰자 결정
  - 사업장 규모 실사 후 우선협상 대상자와 수의시담
9. 유의사항
  - 계약이행담보를 위하여 1회 최대금액(금이백만원)의 10%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함.
10. 기타 의문사항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해서는 우리학교 사무과로 (TEL041- 550-0915, FAX041-550-0950) 문의 바랍니다.

2006년 1월 23일

**중앙소방학교 재무관**